

[별표 2]

보고기일표(제49조관련)

구 분 보고주기	기 산 시 점	제 출 기 일		
		최초작성기관 →1차경유기관	1차경유기관 →2차경유기관	2차경유기관 →최종수보기관
즉 보	발행시점부터	즉 시	즉 시	2일 이내
일 보	발생일부터	1일 이내	2일 이내	3일 이내
주 보	주말부터	1일 이내	2일 이내	3일 이내
순 보	순기말부터	1일 이내	2일 이내	4일 이내
반 월 보	반월기말부터	2일 이내	3일 이내	5일 이내
월 보	월말부터	4일 이내	6일 이내	10일 이내
기 보	분기말부터	5일 이내	10일 이내	15일 이내
반 년 보	반년기말부터	10일 이내	15일 이내	20일 이내
연 보	연말부터	15일 이내	20일 이내	30일 이내